

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·복사 제한신청 안내

1. 신청사유

민사·행정·특허 등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본안사건의 당사자 등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·복사를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,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
-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)이 적혀 있는 때

2. 신청자격 : 민사·행정·특허 등 본안사건의 관계인

당사자, 법정대리인, 특별대리인,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, 참가인, 소송수행자, 소송대리인, 지배인, 선정자, 증인,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위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

3. 신청방법

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(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)의 법원서기관·법원사무관·법원주사·법원주사보에게 열람 등 제한신청서 접수

4. 근거법률 :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, 제162조